

광주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610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6103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5389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성덕호, 전준호, 홍영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동근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송진민

변론 종결 2022. 5. 26.

판결 선고 2022. 6. 2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5389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9.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인경

판사김진만

판사유상호

별지